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05 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:유상범·김소희·김기현

고동진 • 이인선 • 김정재

조배숙 · 서범수 · 곽규택

서지영 · 김성원 · 장동혁

조정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「행정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,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,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, 「행정기본법」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, 제6조, 제10조).

법률 제 호
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의 제목 "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)"를 "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연장하거나"를 "연기하거나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(重傷害)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2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③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 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 - 1.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 - 2.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

하는 행위를 한 경우

- 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 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제3항 중 "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"을 "제5조제4항·제5항 및 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 제10조제4항 중 "제6조제2항 및 제3항"을 "제5조제4항·제5항·제7항 및 제6조제2항·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제5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 납부) ① 특별자치 기 및 분할 납부) ① -----도지사 ·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"과징금 납 부의무자"라 한다)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 거나 ----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 1.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 1.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 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 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 우 (重傷害)로 장기 치료가 필요 한 경우 2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
- 3.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

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

 상되는 경우
- 4.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(重傷害)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

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

 있는 경우
- ② (생략)
- ③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·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도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.
- 1.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

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

 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

 한 때
- 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

<u>경우</u>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 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 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과징금을 한 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- 1.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

 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

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- 2.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

-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 • 특별자치시장 • 시장 • 군 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때
- 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 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때

- ④ (생 략)
- 제6조(이행강제금) ① ② (생 략)
 -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.
 - <신 설>

- 경우
- 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 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 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
- ④ (현행과 같음)
- | 제6조(이행강제금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 - 조제4항 · 제5항 및 제7항-----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• 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 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.

제10조(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	제10조(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	4
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	
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	
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	제5조제4항・제5항・제7항 및
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	<u>제6조제2항 • 제4항</u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